

고려대학교 유아이에 대한 관리규정

2005. 3. 1 제정
2015. 11. 1 일부개정
2019. 3. 1 일부개정
<커뮤니케이션팀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(UI : University Identity)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고려대학교 유아이라 함은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교장, 로고, 교색, 서체와 그를 응용한 일체의 시각적 표현물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은 고려대학교 전 기관과 교우회 등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모든 기관들을 범위로 한다.

제 4 조 (사용) ① 고려대학교 유아이의 사용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(Korea University Identity Standards Manual)에 따라야하며, 임의로 해석 및 변경해서는 안 된다.
② 유아이를 사용할 때는 유아이 관리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주무부서) 유아이 관련 업무는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에서 관장한다.

제 6 조 (교장) 교장은 일반 교장과 글로벌 심볼 두 종류가 있으며 사용방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7 조 (로고) 로고는 한글, 한문, 영문과 혼용이 있으며 사용방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8 조 (교색) 교색은 크립슨색으로 색상값과 사용방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9 조 (엠블렘) 엠블렘은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해야하며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10조 (전용서체) 전용서체는 교명과 고려대학교 학칙 제1장에서 정한 교육조직 및 각 기관의 명칭 표기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방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11조 (지정서체) 지정서체는 전용서체 외의 공식적인 표기에 사용하며 사용방법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제 12조 (기타) 기타 응용물들의 제작 및 사용은 고려대학교 유아이 지침서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편제조정사항 반영: 제5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기구·직제 조정 사항 반영: 제5조 개정)